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8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윤재옥 · 김선교 · 김 건
김상훈 · 백종현 · 박충권
안철수 · 박수민 · 서천호
안상훈 · 한기호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어 사무처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산된 지휘 체계로는 현장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일선 위원회는 상임위원 직제조차 없이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만 운영되어, 다수의 개표소 운영 등 방대한 현장 실무를 빈틈없이 통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완벽하게 통할하도록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해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을 “부위원장”으로,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이거나 부위원장도 사고”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5호 중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해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常任委員은 政務職”을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국무위원”은 “대법원장”으로,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을 수행하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의 상임 위원장 호선에 관한 특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

⑥ -----
--부위원장-----
-----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이거나 부위원장도 사고-----

-----.

<삭 제>

60歲로 한다.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教授이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3.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상 근무한 者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으로서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 때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략)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국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

 -.

1. ~ 4. (현행과 같음)
5. 市·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해당하는 -----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정무직-----
 -----대법원장의-----
 -----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p><u>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p> <p>③ (생략)</p>	<p><u>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	---